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 및 국립대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법률 21351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법률 21352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과 의대교육기반과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실행의 전담인력으로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충된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6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서울대학(치과)병원”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제12호 및 제13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각각 “서울대학(치과)병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4”를 “686”으로, 일반직 계 “583”을 “585”로, 3급 또는 4급 이하 “564”를 “566”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0”을 “209”로, 3급 또는 4급 이하 “151”을 “1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치과)병원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총계	688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계	95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93
일반직 계	587
고위공무원단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5
3급 또는 4급 이하	568
전문경력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45. (생 략) 46. <u>국립대학병원</u> 의 관리 및 지 원 47. ~ 75. (생 략)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5. (현행과 같음) 46. <u>서울대학(치과)병원</u> ----- -- 47. ~ 75.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 ② (생 략)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1. (생 략) 12. <u>국립대학병원</u>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13. <u>국립대학병원</u> 운영 관리 및 병원장 · 임원 임명에 관한 사 항 14. · 1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서울대학(치과)병원</u> ----- ----- 13. <u>서울대학(치과)병원</u> ----- ----- -- 14. · 1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84</u>		<u>686</u>	+2	
	.		.		.		
	.		.		.		
일반직 계			<u>583</u>		<u>585</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64</u>		<u>566</u>	+2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10</u>		<u>209</u>	-1	
일반직 계	.		.		.		
			<u>162</u>		<u>161</u>	-1	
3급 또는 4급 이하	.		.		.		
			<u>151</u>		<u>150</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5 - 2370